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0. 19 선고 2020가단2132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신성호, 배은서

피 고 1. A

2. 주식회사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이광섭

변 론 종 결 2021. 8. 31.

판 결 선 고 2021. 10. 19.

주 문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C과 피고 A 사이에 2019. 3. 20.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A은 주식회사 C에 2019. 3. 20. 접수번호 D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C에 2020. 3. 23. 접수번호 E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순번 2, 3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C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19. 4. 19.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C에 2019. 4. 19. 접수번호 F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들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1. 14. 별지 목록 순번 2, 3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2017. 9. 8.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0. 31. 소외 회사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어,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G(이하 ‘G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7. 10. 31. 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19. 2. 1.경 이자 연체로 위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9. 3. 20.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접수번호 D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바. G은행은 2019. 3. 26.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다.

사. 소외 회사는 2019. 4. 19.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별지 목록 순번 2, 3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각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접수번호 F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아. 원고는 2019. 7. 5. G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G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184,390,22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자. 원고는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74671호로 구상금 184,390,223원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10. 22.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차. 피고 A은 2020. 3. 23. 피고 회사에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접수번호 E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카. 한편 소외 회사는 2017. 10. 31.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법원 2019가단228758 사건과 동일하여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과 이 법원 2019가단228758 사건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대위변제금 184,390,223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등(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2019. 3. 20. 및 2019. 4. 19. 당시 이미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되어 있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G은행의 대출이 시행되어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는 2019. 2. 1. 이자를 연체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소외 회사의 G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2019. 3. 20. 및 2019. 4. 19. 당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이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소외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한편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19. 3. 20. 및 2019. 4. 19. 위 특허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이를 이전하여 줌으로써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였으므로, 위 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양도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재산상태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위 양도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 및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 양도의 기초가 되는 특허권양도양수계약은 2018. 2. 2.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특허권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들이 제출한 소외 회사와 A 사이의 특허권양도양수계약서(을 제1호증)에 확정일자가 없는 점, ② 피고들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중 2018. 2. 2. 및 2018. 12. 20.의 거래내역은 피고 A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H의 개인 계좌에 돈을 지급한 내역인 점, ③ 피고 A이 소외 회사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은 2019. 2. 13. 및 2019. 2. 28.인 점(이는 소외 회사의 이자 연체일 이후이다), ④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특허등록원부상 등록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을 것인데, 등록원인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한 특허등록원부상 전부이전등록일 무렵에 그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A이 오래전부터 사업을 구상하여 피고 회사를 인수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한 것일 뿐,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나 구체적인 자금 사정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 내지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2018. 2. 2. 소외 회사와 피고 A 사이에 특허권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A은 소외 회사의 주주 겸 사내이사로 재직한 점, ③ 피고 A이 피고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H의 아내 I가 주식을 일부 취득하는 등으로 관여하였고, 피고 A이 피고 회사를 인수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날 I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4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1) 따라서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 A 사이에 2019. 3. 20. 체결된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 A은 소외 회사에 2019. 3. 20. 접수번호 D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전득자인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 2020. 3. 23. 접수번호 E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별지 목록 순번 2, 3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9. 4. 19. 체결된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 2019. 4. 19. 접수번호 F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기진석

별지

목 록

1. 특 허 번 호
출 원 번 호
출 원 일
등 록 일
발명의 명칭 유리온실의 스크린 장치
2. 특 허 번 호
출 원 번 호
출 원 일
등 록 일
발명의 명칭 유리온실
3. 특 허 번 호
출 원 번 호
출 원 일
등 록 일
발명의 명칭 유리온실의 용마루 결합구조

- 끝 -

